

주차장법시행규칙개정령

◇ 개정이유

개정된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 및 동법시행령(1990. 8. 8. 대통령령 제13,06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주차장의 설비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주차구획

현행 규정상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5미터이상, 길이 5.5미터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앞으로는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

2) 차로의 너비

현행 규정상 직각주차형식인 경우 7.6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의 차로너비를 6.0미터 이상으로 축소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함(제6조 제1항 제3호나목).
 나.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소·휴게소·공중변소등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대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대시설규모를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10퍼센트범위내로 하고 간이매점 및 자동차장식품판매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영노외주차장설치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제6조 제3항).
 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차장설치의무가 부과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로의 너비를 따로 두지 아니

하도록 하고, 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규모가 5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함(제11조 제2항).

라.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 황등 입지여건상 당해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장설치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고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기준을 현재는 주차대수 1대당 24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차구획과 차로의 기준등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그 면적을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규모가 5대이하인 때에는 11.5제곱미터로 완화조정하여 주차장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제14조).

주차장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자동차가 기계장치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기계식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물식

2. 기계식주차장 : 지하식·건축물식 또는 공작물식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6.5미터이상으로 한다.

제4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기타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분리대 기타도로와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로서 그 차도의 너비가 6미터미만인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종단구배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단구배가 6퍼센트 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7. 도로교통법 제28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8.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너비(3.5미터이상)가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4조 제2항·법 제12조 제3항 및 법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용자에게 편

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유치권안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의 주차용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이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원·광장·대로변 및 상가인접지역등에 연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28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다.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미만의 도로)와 종단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법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도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번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	5.0
직각주차	6.0	6.0
60도 대향주차	4.5	5.5
45도 대향주차	3.5	5.0
교차주차	3.5	5.0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기계로 주차하고자 하는 충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 3 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이상(2차선의 경우는 6.5미터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8.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조

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차로의 노면 : 50룩스이상

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 20룩스이상

9.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제 1 항에서 정한 구조 및 설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노외주차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리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기타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제 7 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등) ① 법 제1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와의 자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구조변경신고 및 설치완료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제 1 호 및 제 6 호의 서류에 한하여 그 제출을 요하며, 설치완료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사업지안의 주차시설배치도

2. 인근 300미터이내의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축적 1천200분의 1이상일 것)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

4. 토지등기부 등본

5.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6.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서(구조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계획서)

② 시장·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 1 호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관리규정) ① 법 제1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외의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작성하는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2. 노외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노외주차장의 운영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1일에 있어서는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은 확정액으로 정하고, 주차요금의 적용방법,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방법등을 포함한다)

7. 노외주차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노외주차장의 차종별 주차대상 자동차의 수량

② 제 1 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차시간 30분을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시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관리규정의 신고등) ① 시장·군수
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법 제15조 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
장관리규정을 제출하거나 변경신고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
관리규정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관리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관리규정을 말한다)
2. 주차요금산출기초서
3. 신·구조문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의 제출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 2 호서식의 노외주차장 관리규정신고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용중지신고서등) ① 영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공용중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는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외주차장공용중지·폐지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5 조 제 6 호 및 제 7 호와 제 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며,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규모가 5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계획서) 영
제 7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계획서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다.

제13조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등)

(제 1~3호서식)		(날짜)	(및 면)	
노원구자랑공동 신고서 및 신고현장		증거 제시기간 5 일		
신 고 악 성	①생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 번호		
주 차 경 우	⑤생명	⑥주차장의 명세		
	⑦위치	⑧유형	대	면
⑨공용 신고 면로	제 호	⑩		
		⑪공용승용차 ⑫공용폐기물		
⑬공용승용차 또는 폐기 사	제 호	⑫공용승용차 ⑭공용폐기물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시장·군수)押捺				
첨부서류		수 수 표		
공용승용차 또는 폐기부분을 표시한 축면 1천200분의 1(이상의 도면)(주차장의 구불을 공용승용차 또는 폐기 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있 음		
190mm×268mm (한국용지 (2금)160g/m ²)				
※기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고인이 벌인 경우에는 벌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③란은 신고인이 벌인 경우에는 벌인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벌인 경우에는 벌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5. ⑮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置 期 限	行 使 기 관	
		제 시 - 준	관 계 부 서	
신고서 작성		→	경 수 → 경 도 → 경 재 → 신고증 작성	
신 고 처 도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현장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별지 제2호 서식)		(날짜)	(첨부)	
		노원구자치관리규정	처의기간 5 일	
신고 및 주 허 장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기록상 주의사항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1. ①은 신고인이 벌인인 경우에는 벌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⑤명 칭	⑥주차장의 형태	2. ③은 신고인이 벌인인 경우에는 벌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⑦위 시	⑧규 모	3. ④은 신고인이 벌인인 경우에는 벌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⑨상 허 신 고 서 호	⑩신 고 연 일	4. 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⑪준공년 월일	⑫문 출 채 시 설정일	5. ⑩은 수 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수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⑬착공예정일		6.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	
			(4)신고의 경우)	
	변경사유		신청(신고)인	처 리 기 관 시 · 구 군 계 부 서
	주차장법(제15조제2항·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서·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작성	경 수 경 보 경 재 * 신고장 또는 변경 신고서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의 라 신고인 인		수 주 요 일 총		
1. 관리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과 관리 규정을 알현한다) 2. 주차장법 신고서 3. 신·구조증명내용(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3003-00011번 84125, 은평 (이하 이고서는 제15조제2항)		150mm x 250mm ※본 표지 는 제15조제2항 을 교부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뒷 면)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지역화 주의사항	
신 고 일	① 생 명	② 주민등록번호	1. ①번은 신설인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③ 주 소	④ 신 차 란 호	2. ⑤번은 신설인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⑤ 차 사	⑥ 주 차 대 수 대 표	3. ⑦번은 신설인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로 기재한다.	
	주 차 장	⑧ 주차장의 형태	4. ⑨번은 주차장에 수거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소유·보유자 의 거리	⑩ 주 중 암 칭	5. ⑪번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기재 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설인 인				
(장서·군수) 허락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공사장제작서(기관의 주차장으로서 세로운 공간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설정(신고) → 세 티 가 관 → 일 기 관 → 지방자치부	
2.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실시설계도 포함한 지역의 보호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주택 1주택당 1000평 이하의 지도				
3. 도로의 지면, 저수지 및 범위에 기재한 도로지도(건축물주차장인 경우 에는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수층 및 높이와 주차容量을 기재한 건축고 시도 포함한다)				
4. 표지판·주차등·주차장(건축물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주기부동본을 포함한다)				
30305-03411번		150mm × 265mm		

① 영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신청서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19조 제5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납부할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부설주차장설치외무면제신청인이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외무면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 법 제19조 제 7 항 및 영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영 제 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토지가액평가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8 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5대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1. 5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등) 영 제11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하고, 부설주차장설치면제신청 및 비용납부계획서는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등) 영
제12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 호
서식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변
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증표) 법 제2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등이 신청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4조, 동조동항 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축허가제한으로 허가신청이 거부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중 동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동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4호, 동조동항 제5호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9호 서식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일 봄)
부설주차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서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원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전 환 번 호
시 설 물	(5) 위 치	(6) 용 도
	(7) 규 모	
주 차 장	(8) 종 구 약	대 (₩)
	(9) 이어 신설될 규모	대 (₩)
	(10) 주차 설치될 규모	대 (₩)
	(11) 설치에 필요한 비용	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통합자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설치의무를 면제받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려여 이에 실질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책략		
월별서류	수수료	
대체로 대안 조치기준평가서		
38303-01011번	150kg × 268m ²	
8412. 5. 30(일)	(인적용지면적 150kg/m ²)	

■ 자체장 주의사항

- ①단은 신청인이 벌인경 경우에는 벌인의 영장 및 대포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 ②③단은 신청인이 벌인경 경우에는 벌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 ④단은 신청인이 벌인경 경우에는 벌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⑤단은 전축풀증이나 연락력을 기재한다.
- ⑥⑦단은 전축풀증이나 경매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원	처 리 기 관	형 의 기 관
시	·	군
관 제 무 시		
신청서	→	경 수
작성		경 보
		경 계
교부		연 세 서 사 작 성

면서 서 약

주차장설치면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서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별지 제8호서식]		(일 면)		
부산주차장용도변경신설서		처리기간 7 일		
주차장	(1)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주민등록번호		
	(3)주 소	(4)전화 번호		
	(5)위 치	(6)승 규 모 대 마		
	(7)용도변경사항 당 초 변 경			
	(8)용도변경사유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등록사업규칙 제1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부산주차장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설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명·본수) 관리			
첨부서류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0303-037111번 19m x 268m 59.108.승인 (선풍면적 54.5m ²)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이 허가되는 구역) ① 영 제6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가되는 아파트형 공장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4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제2항 본문 및 동항 제1호중 “음료수용”을 각각 “음용수”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용수의 배관설비는 한국공업규격표시 품인 별표 6의 배관재료를 사용할 것.

제22조의 3중 “공장중 단위면적당 작업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을 “공장중 건설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공장”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6] 음용수배관재료(제22조 제2항 제2호 관련)

[별표 6] 음용수배관재료(제22조 제2항 제2호 관련)

배관재	규격
1. 동관	KS D 5301(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판)중 급수용 동관

2. 스테인레스관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중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해시험에 합격한 것

3. 아연도강관

KS D 3537(수도용 아연도강관)

4.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KS D 3619(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5. 에폭시 수지 분체 코팅 강관

KS D 3608(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내외면 코팅 강관)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차목중 “100제곱미터 이하”를 “3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동항동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종묘배양장 : 해태, 미역 등의 종묘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1가구(양식면허를 소지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한한다)당 기존 종묘배양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제7조 제1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의 증축 :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자의 주택으로서 지하층이 없는 경우의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1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러목중 “서울특별시 둔촌동에 설치하는”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마. 교정시설의 이축·증축과 구치소의 신

축

제7조 제1항 제3목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동호에 누목 및 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행정구역(경찰서등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개편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청·구청·군청·경찰서 등 시·군·구 단위 공공청사(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구역 외에도 적정한 입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및 농업협동조합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

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휴식시설(잔디광장·피크닉장·청소년수련시설 등)과 그 부대·보조시설(간이시설에 한한다)

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개발제한 구역지정이전부터의 나대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외의 체력단련시설(칠봉·평행봉·배구장·정구장 등 건축물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라목중 “저장시설”을 “저장시설(송유관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바목중 “무연유류저장을 위한 저장시설의 증설”을 “주유기보호시설의 설치와 무연유류

저장을 위한 저장시설의 증설”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숙소 및 교육훈련시설을 제외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중 “개축”을 “증축·개축”으로 한다.

제8조 제3호중 “시화지구개발사업”을 “시화지구개발사업 및 부천중동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다만, 다른법령에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따로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입지조건등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입회원



柳瓊奎(56年)
부산공대 건축
유경건축
부산 북구 구포 1187-2
338-3366~7



金亨度(56年)
홍익대 건축
진성, 대건, 천지(종합)
서울 관악 봉천 1595-4
888-6729



李漢明(49年)
서울산업대, 연세대학원
희진, 장호, 명문(종합)
서울 강동 성내 539-2
487-1577



權秉洙(57年)
서울대 건축
서림건축
서울 영등포 여의도 12-5
780-1489



元堤鍾(59年)
홍익대 건축
시·상건축
서울 서초 반포 67-1
594-2262



龐會男(43年)
인하대 건축공
도성, 무이건축(종합)
서울 강남 신사 664-8
546-4568



康柄薰(29年)
원광대 국문학
조형건축(종합)
대전 중구 대홍 487-1
26-0123



朴洪奭(35年)
영남대 건축공
서연건축
서울 마포 망원 482-3
338-4777~8



李孝秋(57年)
서울대 건축
범진, 두순, 양지(종합)
서울 송파 신천 11-9
420-8762



南廷錫(58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다반건축
서울 서초 방배 450-15
584-3482



金秀泰(56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솔샘건축
서울 도봉 수유 190-5
997-3224



趙鍾晚(33年)
한양대 건축
성북건축
서울 성북 삼선 299
927-1966



閔泳浩(52年)
동국대 건축
소라·이래건축(종합)
서울 마포 도화 250-4
719-3364



李亨基(51年)
한양대 건축
새롬건축
서울 관악 봉천 944-34
872-5743



吳雪姬(59年)
전국대 건축공
성도건축
경기 고양 원당 583-18
965-4912



王好相(52年)
서울공고 건축
선진 환경건축
서울 성동 옥수 220-1
298-4034



朴雲天(59年)
전남대 건축
죽림건축
서울 강남 대치 999-2
569-5842



崔慶一(44년)
인하대 건축, 서울대학원
신한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160-18
554-8541



李英宰(48년)
서울대 건축공
(주)창조건축(종합)
서울 영등포 여의도 25-15
780-0071



千基俊(48년)
연세대 건축공
(주)대동건축(종합)
서울 서초 서초 1485-8
588-5332



鄭泰容(35년)
한양대 건축공
거송건축
서울 동대문 용두 729-6
927-7377



李東鍵(60년)
울산대 건축, 연세대학원
예림건축
울산 남구 달동 874-9
69-5771



李康浩(55년)
중앙대 건축공
이강호건축
서울 강남 논현 74-22
515-0844

자료

1990년도 11월분 전국도서신고 현황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m²)

구 分	1989년도	1990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247,122	1,637,177	390,055 31.28%
	부산지부	473,863	566,330	92,467 19.51%
	대구지부	340,592	354,822	14,230 4.18%
	인천지부	490,786	764,951	274,165 55.86%
	광주지부	117,566	329,226	211,660 180.04%
	경기지부	1,145,601	1,244,261	98,660 8.61%
	충남지부	172,916	275,470	102,554 59.31%
	전남지부	339,471	342,081	2,610 0.77%
	경북지부	428,664	524,118	95,454 22.27%
	경남지부	863,164	1,704,603	841,439 97.48%
감소지역	제주지부	95,373	115,743	20,370 21.36%
	대전지부	268,814	188,295	(80,519) -29.95%
	강원지부	306,209	290,997	(15,212) -4.97%
	충북지부	480,109	356,049	(124,060) -25.84%
합 계		7,047,536	8,882,530	1,834,994 26.04%

1.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11월분 7백 4만7천5백 36m²보다 26.04% (1백 83만4천9백 94m²) 증가한 8백 88만2천5백 30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11월 누계 8천8백 32만2천5백 23m²보다 42.43% (3천7백 47만5천81m²) 증가한 1억2천5백 79만7천6백 4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10월분 7백 65만8천4백 7m²보다 15.98% (1백 22만4천1백 23m²) 증가한 8백 88만2천5백 30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m²)

종 별	10월분	11월분	증 · 감	비율(%)
단 독 주 택	629,992	613,764	(16,228)	-2.58%
다 세 대 주 택	435,378	399,443	(35,935)	-8.25%
연 립 주 택	292,579	125,049	(167,530)	-57.26%
아 파 트	3,601,033	4,454,576	853,543	23.70%
근린생활시설	843,380	509,546	(333,834)	-39.58%
종 교 시 설	58,811	66,795	7,984	13.58%
의 료 시 설	20,047	21,235	1,188	5.93%
교육연구시설	260,849	281,047	20,198	7.74%
업 무 시 설	302,543	468,390	165,847	54.82%
숙박시설	22,519	48,155	25,636	113.84%
공 장	718,729	1,202,724	483,995	67.34%
기 타	472,547	691,806	219,259	46.40%
계	7,658,407	8,882,530	1,224,123	15.98%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月分)

구분 지부별	신축 · 개축 · 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1,042	1,221	1,563,156	67	70	74,021	0	0	0	1,109	1,291	1,637,177
부산지부	973	1,334	522,663	202	225	33,216	33	35	10,451	1,208	1,594	566,330
대구지부	339	390	301,714	538	555	43,595	33	33	10,451	910	978	354,822
인천지부	151	248	744,506	11	11	3,093	23	23	17,352	185	282	764,951
광주지부	188	222	197,618	77	83	127,432	13	13	4,176	278	318	329,226
대전지부	163	191	164,079	38	39	12,315	111	121	11,901	312	351	188,295
경기지부	1,210	1,473	1,137,204	160	185	77,425	73	73	29,632	1,443	1,731	1,244,261
강원지부	370	492	254,404	93	109	32,462	19	19	4,131	482	620	290,997
충북지부	418	557	277,843	86	112	49,957	40	40	28,249	544	709	356,049
충남지부	261	284	185,625	110	114	83,711	28	28	6,134	399	426	275,470
전북지부	209	259	136,234	81	95	34,668	20	20	17,505	310	374	188,407
전남지부	429	568	299,884	97	110	37,732	36	39	4,465	562	717	342,081
경북지부	407	545	401,325	141	208	101,531	29	30	21,262	577	783	524,118
경남지부	1,021	1,344	1,609,897	213	266	76,523	37	37	18,183	1,271	1,647	1,704,603
제주지부	139	170	101,012	70	72	14,731	0	0	0	209	242	115,743
합 계	7,320	9,298	7,897,164	1,984	2,254	802,412	495	511	182,954	9,799	12,063	8,882,530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1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39,739	41,124	22,259,297	1,199	1,297	640,670	0	0	0	40,938	42,421	22,899,967
부산지부	13,783	16,981	8,869,088	3,015	3,746	529,827	478	507	293,747	17,276	21,234	9,692,662
대구지부	8,726	9,293	4,812,854	5,014	5,163	506,386	349	351	108,568	14,089	14,807	5,427,808
인천지부	7,737	9,285	7,747,328	412	537	179,077	206	246	84,723	8,355	10,068	8,011,128
광주지부	4,096	4,591	3,515,081	1,355	1,448	476,582	132	132	45,358	5,583	6,171	4,037,021
대전지부	4,203	4,662	3,768,113	574	583	189,240	1,091	1,128	319,031	5,868	6,373	4,276,384
경기지부	31,298	35,857	28,274,650	2,362	2,613	1,342,904	808	815	582,982	34,468	39,285	30,200,536
강원지부	5,345	6,509	3,454,360	1,340	1,568	496,696	183	190	41,850	6,868	8,267	3,992,906
충북지부	6,582	7,630	3,205,956	1,205	1,415	659,551	506	517	312,083	8,293	9,562	4,177,590
충남지부	4,889	5,212	3,277,270	1,354	1,376	579,680	322	325	175,989	6,565	6,913	4,032,939
전북지부	4,229	4,918	3,388,160	1,067	1,176	320,722	257	258	84,107	5,553	6,352	3,792,989
전남지부	5,852	6,988	3,944,883	1,646	1,972	604,754	275	285	87,821	7,773	9,245	4,637,458
경북지부	7,969	9,512	5,259,800	2,289	2,728	1,243,682	276	277	176,208	10,534	12,517	6,679,690
경남지부	15,466	17,856	11,337,102	3,388	3,903	1,378,618	359	363	202,485	19,213	22,122	12,918,115
제주지부	2,242	2,606	907,319	662	676	113,092	0	0	0	2,904	3,282	1,020,411
합 계	162,156	183,024	114,021,171	26,882	30,201	9,261,481	5,242	5,394	2,514,952	194,280	218,619	125,797,604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3,535	3,671	557,455	885	916	51,932	73	73	4,377	4,493	4,660	613,764
다세대주택	835	919	392,796	45	47	4,265	24	33	2,382	904	999	399,443
연립주택	75	113	122,258	2	2	2,791	0	0	0	77	115	125,049
아파트	220	1,124	4,442,296	7	9	12,175	2	2	105	229	1,135	4,454,576
근린생활시설	1,112	1,175	422,725	300	308	33,922	219	220	52,899	1,631	1,703	509,546
종교시설	82	90	40,762	55	73	25,416	2	2	671	139	165	66,795
의료시설	6	6	2,295	11	13	18,501	1	1	439	18	20	21,235
교육연구시설	48	93	212,947	55	63	58,800	28	28	9,300	131	184	281,047
업무시설	95	129	408,665	39	43	38,185	12	12	252	29	42	48,155
숙박시설	18	30	42,557	10	11	5,346	1	1	525	29	42	48,155
공장	547	963	728,150	302	444	420,546	73	76	54,028	922	1,483	1,202,724
기타	747	985	524,258	273	325	130,533	60	63	37,015	1,080	1,373	691,806
합 계	7,320	9,298	7,897,164	1,984	2,254	802,412	495	511	182,954	9,799	12,063	8,882,530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1月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80,025	81,586	14,252,370	12,561	12,936	840,803	773	777	52,336	93,359	95,299	15,145,509
다세대주택	20,099	21,596	6,730,453	958	979	78,884	134	156	13,351	21,191	22,731	6,822,688
연립주택	1,164	1,601	1,936,667	41	48	25,047	7	7	2,350	1,212	1,656	1,964,064
아파트	2,587	12,341	48,818,636	125	192	370,954	43	53	199,899	2,755	12,586	49,389,489
근린생활시설	41,277	42,309	20,259,664	5,296	5,798	1,049,109	2,476	2,491	771,084	49,049	50,598	22,079,857
종교시설	1,009	1,155	590,511	562	641	221,119	75	80	64,776	1,646	1,876	876,406
의료시설	73	83	147,238	97	108	140,373	33	33	26,041	203	224	313,652
교육연구시설	480	703	1,501,116	757	897	831,234	240	249	182,845	1,477	1,849	2,515,195
업무시설	1,582	1,761	5,700,720	533	552	386,090	119	124	133,079	2,234	2,437	6,219,889
숙박시설	671	733	1,365,720	202	210	104,922	98	98	185,325	971	1,041	1,656,182
공장	5,353	8,908	7,484,322	2,665	4,095	3,786,489	582	630	562,059	8,600	13,633	11,832,870
기타	7,836	10,248	5,233,539	3,085	3,745	1,426,457	662	696	321,807	11,583	14,689	6,981,803
합 계	162,156	183,024	114,021,171	26,882	30,201	9,261,481	5,242	5,394	2,514,952	194,280	218,619	125,797,604